

기초지방정부 정책리포트 제5호

신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민선 8기 정책과제 :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상범¹⁾

목차

I. 들어가는 글

- 신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에 입각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선 8기 재정분권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II.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내용

- 2020. 7. 범정부 재정분권 TF 19차 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원안 마련
- 2021. 7. 국회 제2차 재정분권 특위에서 최종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확정 → 2단계 재정분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
 - 지방소비세 4.3% (4.1조원) 추가이양 및 2.25조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1조원 규모, 광역 2.5대 기초 7.5 배분)
 - 기초지방정부 국고보조율 인상 (0.3조원 규모)

III. 2단계 재정분권의 시사점

- 1. 2단계 재정분권의 키워드 : 연대와 협력
 - 시도지사협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
- 2. 지방소비세의 기초지방정부 직접 배분
 - 이양된 지방소비세를 시군구 기초정부에 직접 배분 (공동세 형태)
- 3. 낮은 재정규모의 불안정한 재정분권
 - 총액기준 기초분 최대 1.33조원 순증 효과로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

IV. 민선 8기 재정분권 정책과제

- 1. 국세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 국세대 지방세 비율 7:3 지속 추진
- 2.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 현행 19.24% → 22% 이상
- 3. 기초지방소비세 세목 추진 : 재정분권에 따른 기초분 지방소비세를 기초세목으로 전환
- 4.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 추진 : 보통교부세 교부 및 국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이양

V. 맺는 글 :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 기초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 이양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
- 이를 통해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 시스템' 도입
 - (자체재원 위주) 자율형 지방정부와 (의존재원 위주) 자립지향형 지방정부



I 들어가는 글

-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지난 7월 26일 지역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3대 약속과 10대 국정과제 그리고 47개의 실천과제이며, 이 중 공간적 정의 구현을 위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 관련 4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4개 과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진일보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성장에 전인차가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재정분권 관련 국정과제〉

- 112번 과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 예산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으로 나눈 것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재정자주도의 제고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에 입각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선 8기 재정분권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II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내용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경과

- 2018. 10. 정부 5개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 발표
- 2019. 12.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지방소비세 10%p, 8.5조원 이양)
 - 7개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27.)
- 2019. 9. 범정부 재정분권 TF 1차 회의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 재정분권 TF :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시도지사협, 시장군수구청장협, 시도교육감협,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 및 기획단 위원 참석
- 2019. 9.- 2020. 2. 재정분권 TF 2차 - 12차 회의
 - 기재부 측의 지속적인 지방분권세(교부세의 공동세화) 논의 및 재정중립 관점 주장
 - 시도지사협·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 촉구 공문 2회 발송
 - (1차, 2. 27.) 재정분권 추진 기본(재정중립 원칙 폐기 및 지방분권세 논의 중단 등)
 - (2차, 3. 25.)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포함할 사항 논의
- 2020. 3. - 4. 재정분권 TF 13차 - 14차 회의
 - 시도지사협·시장군수구청장협 추천 TF 위원 불참
 - 재정분권 철학이 반영된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안) 제시 및 재정분권 T/F 운영 방식 전환 필요에 따라 불참
- 2020. 6. 재정분권 TF 제15차 회의
 - 시도지사협·시장군수구청장협 추천 TF 위원 재참석
 - 재정분권 TF 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수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대상사업 협의 요청에 따라 참석
- 2020. 7. 범정부 재정분권 TF 19차 회의 (최종 회의)
 -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방안 최종 확정
 -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 추가 10%p 인상) 8.5조원
 - 인상된 지방소비세액은 광역 3 : 기초 7 법령 배분규정 논의

- 자치분권위 포용복지뉴딜 방안 : 중앙 고령화 대응, 지방 저출산 극복
 - 기초연금 국가 책임화 : + 3.2조원 (광역 1.2조, 기초 2조)
 -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 6.5조원

- 2020. 9. 2단계 재정분권 방안 BH 보고

- 2021. 3. 국무조정실 주재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부처 차관급 3차 회의
 - 기획재정부 재정중립 강조 및 반대입장에 따라 원점에서 재논의
 - 국회 재정분권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함

- 2021. 6.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당정청 제1차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의 재정중립 의견으로 반대의사 표명
 - 지방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재정순증분 강력 요구

- 2021. 7.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당정청 제2차 전체회의
 - 국회 재정분권 특위 소위(7.19.)에서 축소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협의 및 결정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 규모) 신설 (광역 25% : 기초 75% 배분)

- 2021. 8.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및 토론

[참고]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 및 입법화 과정

■ 8.25일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 발의

- ① 부가가치세법 (4.3%이양, 현행 21%→25.3%)
- ② 지방세법 (지방소비세 : 22년 2.7%, 23년 1.6% 이양)
-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지방소멸대응기금 : 1조원, 광역 25, 기초 75)
- ④ 지방재정법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제외)
- 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안위 소관 법률) 2021. 9.9. 법안 소위, 9.13 행정안전위, 11.11. 본회의 의결 (②번 - ⑥번)

■ (기재위 소관 법률) 2021.11.30. 기획재정부 의결(부가가치세법), 12.2. 본회의 의결

→ 2단계 재정분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

(1)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 2단계 재정분권은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추가로 지방소비세율 4.3%를 인상하는 방안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지방소비세 추가이양은 2단계로 시행되며 22년 지방소비세율 2.7%가 인상되어 2.6조원이 이양되며, 23년 지방소비세율 1.6%, 1.5조원이 이양됨
 - 이로 인해 추가 이양되는 재원은 4.1조원 수준이며, 2.3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 함께 추진됨
- 이 중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하면, 1.8조원이 남게 되며,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보전분 0.8조원을 제외하며, 1조원이 순증이 됨
 - 순증분은 시도별 소비지수 및 가중치(수도권 1, 광역시 1, 도 3)에 따라 배분되며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60% 대 40%의 비율로 배분되며, 기초정부 몫은 기초로 직접 배분됨
 - 광역분 60% 중 조정교부금이 기초지방정부에 배분될 경우, 광역이 0.44조원, 기초가 0.56조원 최종 순증 (배분비율 44% : 56%)

〈그림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방안 (22-26년 한시)

① 전환사업보전분(2.25조/정책)		② 재정조정분(금액미정)		③ 잔여소비세(미정)	
시도 보전분 (1.92조원)	시군구 보전분 (0.33조원)	시군구 조정교부금	교육 전출금	광역 60%	기초 40%

자료 행정안전부(2021).

3.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 지역소멸대응기금은 낙후지역의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하여 도입되며, 기금의 재원은 연간 1조원 규모이고,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10년 일몰제로 신설됨
- 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안에 설치되며, 지역소멸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정부 25%대 기초지방정부 75%의 수준으로 배분되며, 각각 상생발전기금내에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을 두어 운영할 방침임
- 지방정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500억원이 배분될 예정이며, 기초정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89개(21.10.18일 행안부 지정)에 집중지원(90%)하고, 관심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배분될 계획임

4. 기초지방정부 국고보조율 인상

- 2단계 재정분권은 세출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 대응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①기초연금의 일부를 핀셋지원하고 ②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사업을 추가발굴하여 0.2조원 범위의 추가적 지원이 시행될 예정임
 - 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통해 2,002억원 규모의 국고보조 인상 추진

〈표 1〉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국고보조율 인상방안

구분	기존	개선	결과
기초연금 핀셋지원	국비 110억원 핀셋지원	국비 598억원 핀셋지원	국비 489억원 인상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비 2,563억원 (국고보조율 46.6%)	국비 3,729억원 (국고보조율 67.8%)	국비 1,171억원 인상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국비 342억원 (국고보조율 24.2%)	국비 684억원 (국고보조율 48.4%)	국비 342억원 인상

주: 정부예산안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1).

III 2단계 재정분권의 시사점

1. 2단계 재정분권의 키워드 : 연대와 협력

- 재정분권에서 [중앙정부 - 재정선진지역 - 재정낙후지역]의 의사결정 참여구도가 형성될 경우, 재정선진지역이 재정낙후지역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재정낙후지역은 지역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집권지향 의사결정을 찬성하게 될 것임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불균등과 의존재원의 확대에 의해 2단계 재정분권에서 갈등의 요소가 상존해 있었음

- 더욱이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8.5조원을 지방이양한 중앙부처와 재정당국은 추가적 국세이양 보다는 지방교부세를 지방분권세로 공동세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파행적으로 운영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이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결정요인 작용하였고, 지방소비세의 시·군·구 공유 등의 성과로 나타남(이상범, 2022)

2. 지방소비세의 기초지방정부 직접 배분

-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8.5조원)가 이양되었고, 기초정부에 배분된 재원은 광역정부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배분되었음
- 2단계 재정분권은 광역정부의 조정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증가분의 40%인 기초정부분을 기초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함
- 이는 실질적으로 기초정부의 재원확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국세의 지방이양 효과가 있으며, 광역정부의 배분기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한 배분으로 재정예측성을 제고함
- 또한 시, 군, 자치구 기초정부에 지방소비세를 직접 배분하므로, 일종의 공동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향후,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3. 낮은 재정규모의 불완전한 재정분권

- 2단계 재정분권 순증 규모가 순증분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으로 2조원 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순증 1조원 가운데 기초에 우선 배분되는 것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이후 광역이 추가 기초에 배분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므로 이후 최대 1,8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도 기초지원계정이 7,500억원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예정임
- 지방이양 총액 기준으로 기초 배분몫은 1.15조원이고, 이후 조정교부금을 합쳐도 순증은 최대 1.33조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추정됨

- 2단계 재정분권은 재원이양 규모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국세 7대 지방세 3을 실현하기에는 불완전한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의 재원확충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일정 부분 기초중심 재정분권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며, 광역-기초간 재원배분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IV 민선 8기 재정분권 정책과제

1. 국세의 지방이양 지속 추진

-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과 분권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핵심임(손희준, 2011; 이재원, 2019)
-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책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국세:지방세 328.5조:108.5조 (75.2:4.8) 수준임
- 22년 예산기준 22.6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국세:지방세 305.9:131.1조원으로 70:30 달성 가능
 - 이양분에서 30%는 순증(약 6.8조원)으로, 70%는 국고보조사업 이양 등 자치경찰, 복지사업 재원으로 추진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지방세 7:3 구조개편의 완성 (2022-2024년 까지) 및 국세-지방세 6:4 (2025-2026년 까지) 지속 추진

〈표 2〉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세	2,425,617	2,653,849	2,935,704	2,934,543	2,855,462	3,046,421	3,285,760
지방세	755,306	804,063	843,153	904,572	1,022,963	1,022,963	1,085,070
국세 비율	76.3	76.7	77.7	76.4	73.6	74.9	75.2
지방세 비율	23.7	23.3	22.3	23.6	26.4	25.1	24.8

주: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최종예산, 2022년은 당초예산.
자료 행정안전부(2022a).

2.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 재정자주도의 제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체재원보다는 이전재원 확충에 더 큰 비중과 지향점이 있는 것임
- 본 과제는 신정부 국정과제 112번의 세부과제로 ‘재정자주도 기반목표설정’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교부세 확대 개편은 세입분권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기능, 특히 지방정부 상호간 세수입 격차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임(손희준 외2, 2017)
 - 지방교부세는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4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 유지
- 또한 2017년 이후 보통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지속 하락하여 지방정부의 부족재원 보전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의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9.24% → 22% 이상 인상

〈표 3〉 연도별 조정률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조정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율	증가율
2017년	757,850	4.25	373,166	1.11	384,685	7.50	94.0	4.79
2018년	863,171	13.90	416,518	11.62	446,653	16.11	91.5	-2.66
2019년	1,000,399	15.90	470,114	12.87	530,285	18.72	86.4	-5.57
2020년	1,031,783	3.14	493,258	4.92	538,525	1.55	83.6	-3.24
2021년	1,104,376	7.04	523,572	6.15	580,604	7.81	76.7	-8.24
2022년	1,214,618	9.98	597,693	14.16	616,925	6.26	89.3	16.44

자료 :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연도).

3. 기초지방소비세 세목 추진

- 현행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기초분 지방소비세는 시군구 기초정부에 직접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재정분권이 지속추진될 경우 지방소비세가 추가이양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과 같이 특·광역시세로만 운영될 경우 자원배분 등의 문제점으로 광역-기초간 갈등이 지속 될 우려있음
 - ※ 일본은 광역과 기초가 50대 50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고 있음

- 기초지방소비세 세목을 신설하여 광역과 공동세 형태로 운영될 경우, 향후 자원배분에 따른 정부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아닌, 지방세인 자체재원으로 세입이 구성되므로, 재정자립도 역시 향상 될 것임
- 또한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를 비롯하여 세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 뿐이므로 기초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자치구에 세목이 추가되어 세입확충이 가능하며, 또한 재정분권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이상범, 2022)
 - ※ 지방소비세율을 40% 수준까지 인상 후, 부가가치세율 국가 60, 광역 30, 기초 10 배분 고려

4.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확충 추진

- (영세한 자치구 세목) 자치구의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뿐이며, 특광역시 대 자치구 세수배분이 약 8.5 : 1.5 수준임(행정안전부, 2021)
- (자치구 교부세 미교부) 자치구에는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특별·광역시가 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심화
- (과도한 사회복지비) 자치구 사회복지 재정수요 반영 미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연금 지원강화, 아동양육수당 확대 지원 및 아동수당도입 등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음(이상범 외2, 2021)
 - ※ 2022년 전국 예산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평균 31.7%, 자치구 예산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평균 57.2% (최고 부산 북구 70.5%)
- (재정분권 본질과 불일치) 자치구는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확충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정제도 개편 요청 필요
- (추진과제 1) 지방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 특·광역시에 전액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 ※ 광역시 재정 감소와 관련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환 검토

■ (추진과제 2) 국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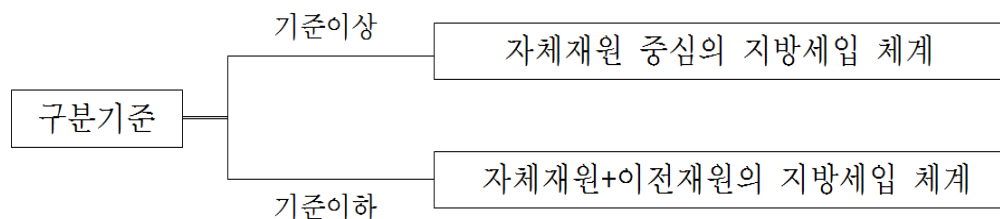
- 국세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자치구세로 귀속 개편 추진. 특·광역시에서는 기존의 담배는 그대로 특·광역시로 존치하고 자치구에는 담배분 개별소비세(국세) 이양

※ 주민세의 특광역시 자치구 추가이양(개인분) 추진 고려

V 맺는 글 :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 향후, 재정분권은 1단계, 2단계 재정분권 경험에 비추어 민선 8기 재정분권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광역과 동등하게 기초단체의 자주재원(지방세 등) 확충 논의가 필요함(이상범, 2019)
- 둘째,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즉,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운영체계를 달리하는 맞춤형 재정분권(차등적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함
 - 현재처럼 전국 통일적 지방재정 운영 틀은 자치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함
 - 지방자치단체를 (가칭)자율형 지방정부와 (가칭)자립지방형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재정운영 방식을 다르게 적용함(유태현, 2017)

〈그림 2〉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향



자료 : 유태현(2017).

- (가칭) 자율형 지방정부 도입 : 자율형 지방정부의 명칭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중앙 및 다른 지방정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부여함

※ (가칭) 자율형 지방정부 도입 : 세입에서 자체재원(=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거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입함

- (가칭) 자립지향형 지방정부 도입 : 중앙에 의한 적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자체재원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함

[참고문헌]

손희준(201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확충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준·라휘문·정성호(2017),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태현(2017),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1-26.

이상범(2019). 광역-기초간 시도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64호 19(4), 165-195.

이상범(2022),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새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이상범, 이원희, 소순창(2021). 서울시 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용역보고서.

이재원(2019), 「지방재정론」, 윤성사.

행정안전부(2021). 2단계 재정분권 설명자료(내부자료).